



KOLAS-G-012 : 2021

ENERGY STAR[®] 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TIE, Korea

1. 개요

이 지침은 미국 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전기·전자제품시험 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기관에 적용된다.

미국 환경청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승인된 시험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국 환경청에서 제시하는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시험기관 승인을 위한 요구조건과 기준” 문서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미국 환경청에서 승인한 인정기구의 공인 시험기관이어야 한다.

KOLAS는 에너지스타프로그램에서 승인한 인정기구이다. 시험기관은 KOLAS로부터 관련된 에너지스타 제품기준의 시험방법에 대해 KS Q ISO/IEC 17025에 따라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후, 미국 환경청에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시험기관으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 관한 운영요령」(KOLAS-R-003), KOLAS SR 문서와 함께 적용된다.

이 지침은 수시로 개정이 가능하며 최신 문서는 KOLAS 홈페이지(www.knab.go.kr)를 통해 공지한다.

KOLAS 인정기구장은 미국 환경청에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에 승인된 KOLAS 공인시험기관이 인정범위의 변동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인정취소, 인정정지, 인정범위 축소 등)에는 KOLAS 홈페이지 혹은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시험기관 인정절차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험기관의 인정을 위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및 KOLAS SR 문서들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은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KOLAS 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 명시된 모

든 구비서류 및 수수료도 제공해야 한다.

에너지스타 홈페이지(www.energystar.gov)에는 각 제품에 대한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요구사항 관련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험방법은 미국 환경청의 승인을 얻기 전에 시험기관의 인정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시험기관은 KOLAS 사무국에 인정신청을 할 때에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이 인정범위 상에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요구사항

에너지스타프로그램을 위해 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은 에너지스타 홈페이지(www.energystar.gov)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시험기관 승인을 위한 요구조건과 기준” 문서에 적합해야 한다.

시험기관은 미국 환경청에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공한 모든 문서와 기록물에 대해 KOLAS 사무국이 검토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시험기관은 에너지스타 제품의 요구사항에서 규정한 시험방법과 일치하는 시험방법으로 제품을 시험해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에너지 스타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시험기관은 그 제품에서 요구하는 모든 규정된 시험방법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험기관은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시험기관 승인을 위한 요구조건과 기준” 의 제4항에 따라 인정범위는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시험기관은 에너지스타 시험성적서가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시험기관 성적서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은 필요시 미국 환경청이 인정기구(KOLAS를 포함하여)가 수행하는 인정평가 활동에 대해 입회가 가능하도록 허가할 것을 요구한다.

시험기관은 KOLAS 사무국에 에너지 스타프로그램 시험과 관련된 미국 환경청의 평가문서 사본(평가보고서, 관찰 및 조치사항 기록, 시정조치 계획과 시정조치 결과의 입증서류 등)에 대하여 공유해야 한다.

시험기관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활동을 하거나 이를 숨긴 경우 미국 환경청/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및 KOLAS 사무국에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험기관은 미국 환경청 및 KOLAS 사무국에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시험기관 승인을 위한 요구조건과 기준” 문서에 명시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시험기관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KOLAS 사무국이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시험절차와 관련된 질의사항을 미국 환경청에 보내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KOLAS 사무국은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이 허가한 시험기관의 기밀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시험기관은 미국 EPA로부터 승인지위가 변경된 경우 이를 KOLAS 사무국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04월 0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ENERGY STAR® 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0-0201호, 2020.08.28.)의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요령에 있는 경우, 종전 고시에 따른 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